

2020. 2. 10. 보도 자료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공보관실 02)708-3411 / 팩스 02)766-7757



제 목 : 2월 13일 공개변론 안내

- 헌법재판소는 오는 **2. 13.(목) 14:00, 16:00** 대심판정에서 아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 번 | 사건번호 및 사건명 | 청구인 (대리인) | 피청구인 (대리인) | 시 간 |
|--------|--|---|---|-------|
| 1 | 201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 국회의원 오신환 (법무법인 경원) | 국회의장 (법무법인(유한) 바른) | 14:00 |
| 2 | 2019헌라4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 관련평가소위 소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관련평가 소위원회 소위원장 권은희 (법무법인(유한) 금성)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공감 파트너스) | 16:00 |

붙임 : 관련사건 보도자료 2부. 끝

보 도 자 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 사건

[201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공 개 변 론]

헌법재판소는 2020년 2월 13일(목) 14:00 대심판정에서, 2019. 4. 25. 접수된 201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하여 변론을 열 예정이다.

이 사건은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 4. 25.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을 청구인 국회의원 오신환에서 국회의원 채이배로 개선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개선행위' 라 한다)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개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는 당사자 변론을 들은 뒤 청구인의 권한 침해 여부 및 이 사건 개선행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2020. 2. 10.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9. 4. 25. 현재 바른미래당 소속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라 한다) 위원이었고,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다.
- 2019. 4. 25. 현재 바른미래당의 대표의원이었다던 국회의원 김관영은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사개특위의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을 청구인에서 국회의원 채이배로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사개특위의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을 청구인에서 국회의원 채이배로 개선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2019. 4. 25. 위 피청구인의 개선행위로 인하여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권한의 침해확인과 위 개선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9. 4. 25. 사개특위의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을 청구인에서 국회의원 채이배로 개선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개선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개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이다.

□ 청구인 주장 요지

-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은 임시회의 회기 중에는 위원을 개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개선행위는 임시회의 회기 중이었던 2019. 4. 25.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을 위반하였다.
- 청구인에 대하여 국회법 제48조 제6항 단서가 규정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개선행위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 단서를 위반하였다.
- 이 사건 개선행위는 국회의원의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보다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서의 지위를 우선순위에 둬으로써 의회주의와 대의제라는 헌법원리를 위반하였다.
- 이 사건 개선행위는 위와 같이 헌법 및 국회법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사개특위 위원으로서의 권한 및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 피청구인 주장 요지

-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임시회의 경우에는 동일 회기 중 개선될 수 없고,’라는 문언을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위 조항은 ‘임시회 회기 중 선임된 위원을 동일 회기 중 개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2018. 10. 18.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이 사건 개선행위에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국회법 제48조 제6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당론과 상반된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소속 위원을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로서 개선 요청하는 경우는 교섭단체의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여야 4당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회법 제48조 제6항 단서가 규정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 현재 2003. 10. 30. 2002헌라1 결정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개선행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사개특위 활동기간 동안 위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또는 법률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권한이라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개선행위는 헌법 및 국회법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주요 쟁점

- 이 사건 개선행위가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개선행위가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 당사자

- 청구인: 국회의원 오신환
[대리인 법무법인 경원(담당변호사 임호영), 법무법인 현대(담당변호사 김태훈), 변호사 박주현]
- 피구인: 국회의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최주영, 김지은, 김정준, 박소영, 이수경, 김도연)]

보 도 자 료

제천화재평가관련소위 위원장과 행안위 위원장간 권한쟁의 사건 [2019헌라4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 소위원장과 국회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공 개 변 론]

헌법재판소는 2020년 2월 13일(목) 16:00 대심판정에서, 2019. 8. 2. 접수된 2019헌라4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 소위원장과 국회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하여 변론을 열 예정이다.

이 사건은 피청구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 2019. 7. 4. 충청북도지사 및 제천시시장에게 ‘제천화재 관련 보고 및 서류 등 제출 요구 공문’ 을 보내면서 청구인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권은희]이 작성한 ‘업무보고 보고자 및 참석대상자 명단’ 을 제외한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2020. 2. 10.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제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2019. 3. 28. ‘제천화재 관련 평가소위원회’(이하 ‘이 사건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소위원회 위원장이고, 피청구인은 행안위 위원장이다.
- 청구인은 2019. 7. 4. 피청구인에게 ‘제천화재 관련 업무보고 요구서 발부 요청’ 공문을 송부하였는데, 위 공문에는 ‘제천화재 관련 업무보고 계획서’와 함께 출석대상자를 기재한 ‘업무보고 보고자 및 참석 대상자 명단’(이하 ‘이 사건 명단’)이 첨부되어 있었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공문을 받고 같은 날 충청북도지사 및 제천시시장에게 “제천화재 관련 보고 및 서류등 제출 요구”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위 공문에는 이 사건 명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청구인은, 자신이 피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에 이 사건 명단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 사건 명단을 제외한 것은 이 사건 소위원회 위원장인 자신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9. 8. 2.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피청구인이 2019. 7. 4. 충청북도지사 및 제천시시장에게 ‘제천화재 관련 보고 및 서류 등 제출 요구’ 공문을 보내면서 ‘업무보고 보고자 및 참석대상자 명단을 제외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 청구인 주장 요지

- 청구인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국가기관’에 해당한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소위원회 위원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명단을 작성하여 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그대로 충청북도 및 제천시에 송부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이 사건 명단을 제외하여 업무보고 요구서를 발부함으로써, 이 사건 소위원회는 애초 계획한 수준의 보고와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게 되었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청구인의 소위원회 운영권 등을 침해하였다.

□ 피청구인 주장 요지

- 청구인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인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의안심사와 관련하여 해당기관에 업무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소위원회의 의결권에 관한 사항이지 청구인의 권한이 아니다.
- 이 사건 소위원회 회의록에는 이 사건 명단에 포함된 참고인들을 국회로 소환한다는 내용이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소위원회의 의결 없이 이 사건 명단을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위는 적법하다.

□ 주요 쟁점

-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소위원회가 청구인에게, 업무보고 출석대상자 명단을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당사자

- 청구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소위원장(권은희)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이승훈, 허성국]
- 피구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정무식, 김진석]